

## 보안서약서

(제12조제1항 및 제27조의2제2항 관련)

본인은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부로 (공무직, 기간제, 단시간)근로자로 재직(퇴직)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.

-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.
-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.
  - 가.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(국가기밀누설등)
  - 나. 형법 제99조 (일반이적)
  - 다. 형법 제127조 (공무상 비밀의 누설)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

서약자 소속

직종

생년월일

성 명

인